

제 호

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 성명:

3. 주소:

4. 전문인력 양성 분야:

「항로표지법」 제46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